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국 가 유 산 영 향 진 단 법 시 행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예측·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 2. 13. 공포, 2025. 2. 14. 시행)됨에 따라, 사전영향협의의 대상을 토지, 내수면 또는 연안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으로 하고, 사전영향협의의 검토 기준을 해당 개발계획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의 검토 여부 및 해당 방안의 적정성 등으로 하며, 영향진단의 대상 사업을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내수면 또는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으로 하고, 국가유산 발굴, 수리, 복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이 지정 기준을 갖춘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전영향협의를 대상 및 기준(안 제2조, 제4조 및 별표 1)

- 1) 토지, 내수면 또는 연안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사전영향협의를 대상으로 하고,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등을 정함.
- 2) 환경오염, 소음, 토지 형질변경 등 해당 개발계획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의 검토 여부 및 해당 방안의 적정성, 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보존조치 또는 보호방안의 검토 여부 및 해당 보존조치 또는 보호방안의 적정성을 사전영향협의를 검토 기준으로 정함.

나. 영향진단의 대상 사업 등(안 제5조 및 제6조)

- 1)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을 영향진단의 대상으로 정함.

- 2) 당초 영향진단을 실시한 건설공사 계획에 따른 건설공사 부지의 외곽경계 내에서 사업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등은 건설공사 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서 영향진단의 대상에서 제외함.

다. 진단보고서의 보완 사유(안 제10조)

진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된 경우, 진단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해당 건설공사 시행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등을 진단보고서의 보완 사유로 정함.

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안 제13조)

국가유산청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국가유산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유산영향진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이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12. 6. ~ 2025. 1. 2., 2024. 12. 23. ~ 2025. 1. 2.)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3건(진단보고서 포함사항 등)

대통령령 제 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영향협의의 대상) 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당초 협의한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계획부지의 외곽경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2. 설치 예정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치 변경이나 높이 증가 없이

연면적 또는 건축면적만 감소하는 경우

3. 설치 예정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위치 변경, 높이·연면적 또는 건축면적의 증가 없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전영향협의의 절차)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한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국가유산청장이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한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보완 요청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국가유산청장이 사전영향협의 검토를 위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 그 의견을 듣는데 걸리는 기간(최장 30일로 한정한다)
3.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영향협의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사전영향협의의 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검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오염, 소음, 토지 형질변경 등 해당 개발계획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2. 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제1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의 검토 여부 및 해당 방안의 적정성
3. 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보존조치 또는 보호방안의 검토 여부 및 해당 보존조치 또는 보호방안의 적정성

②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계(水系)·수량의 변경 또는 수질오염으로 매장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을 받은 계획수립기관의 장은 재검토된 개발계획(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의 내용의 포함된 것을 말한다)에 변경사항 대비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영향협의의 기준 및 개발계획의 재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

여 고시한다.

제5조(영향진단의 대상 사업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1.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매장유산 유존지역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3.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인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영향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거에 매장유산이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가. 역사서, 고증된 기록,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나.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이 국가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지역. 이 경우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③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는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또는 조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원

3.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 또는 공립 박물관

나.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71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시·도문화유산위원회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 또는 시·도자연유산위원회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영향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해당 건설공사가 영향진단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

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으면 국가유산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의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건설공사 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초 영향진단을 실시한 건설공사 계획에 따른 건설공사 부지의 외곽경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2.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7조(영향진단 비용의 지원)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제8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시·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분포 현황을 말한다.

제9조(진단보고서의 검토)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를 말한다.

제10조(진단보고서의 보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된 경우
2. 진단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해당 건설공사 시행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3.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4.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국가유산청장이 진단보고서를 제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진단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보완 요청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토요일과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제12조(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유산영향 진단기관과 영향진단 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진단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중 국가유산 관련 교
 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 또는 해당 대학의 관련 부설 연구
 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
 가유산영향진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그 밖에 국가유산 발굴, 수리, 복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
 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
 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
 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
 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건설공사에 대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
 토, 법 제12조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보완 요청 및 반려, 법 제13조제1
 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법 제16조에 따른 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5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의 외곽경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3. 사업 면적에 포함되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면적이 4천제곱미터 이
 하인 건설공사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다목 중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유산의 지표조사 및 발굴에 드는 비
 용”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영향진단 및 「매
 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영향진단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6 제2호 개별기준 위반행위란 사목 중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영향진단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위한 경우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8호 중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같은 법”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영향진단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향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영향진단의 대상 사업으로 한정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사전영향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종류(제2조제3항 관련)

구분	대상 개발계획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 개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 계획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
	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정비계획
	4)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5)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6)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
	7) 「섬발전촉진법」 제6조에 따른 도서개발사업계획
	8)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10)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
	11)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발 구역 지정
	1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개발계획
	1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14)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1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구역의 지정
	1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광역시설계획
	1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1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2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나. 산업 및 유통 단 지 조성	혁신도시 개발계획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
	3)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
	4)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1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1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된 협동화실천계획
1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다. 교통 시설 의 건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에 따른 도로정비계획
	2)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기본계획
라. 하천 이용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개발	
마. 산지 개발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시·도, 시·군·구 산촌진흥계획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도, 시·군·구 묘지 등의 수급계획
바.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2)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별표 2]

진단보고서 작성 관련 준수사항(제12조 관련)

1. 다른 진단보고서의 내용을 복제 또는 표절하지 않을 것
 다른 진단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표시할 것
2. 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을 것
 가. 현장조사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으로 작성하지 않을 것
 나. 영향진단의 방법을 충실하고 객관적으로 시행할 것
 다. 영향진단 결과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
 라. 관계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경우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유형을 고려하여 자문할 것
 마. 건설공사 부지 또는 그 주변 지역의 지정유산 현황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하지 않을 것
 바. 가급적 최신의 자료를 활용할 것
3. 진단보고서 작성을 다른 진단기관이나 진단기관이 아닌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않을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위반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300만원
나. 법 제21조제2호를 위반하여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3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연 락 처	(042) 481 - 4994